

 <p><b>국토교통부</b>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p>	<b>보 도 자 료</b>		 <p>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</p>
	배포일시	2015. 12. 11(금) 총 3매(본문3)	
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택기금과장 김홍목, 사무관 김수영, 주무관 송혜주</li> <li>• ☎ (044)201-3340, 3344</li> </ul>	
보 도 일 시	2015년 12월 1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13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‘16.1.4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.2%p 인하

-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율 : 2.2% → 2.0%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, 이하 동일) 이자율을 오는 ‘16.1.4일부터 기존 2.2%(2년이상 가입 기준)에서 2.0%로 0.2%p 인하하는 내용의 「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」 개정안을 행정예고(12.14~’16.1.3, 20일간)한다고 밝혔다.
-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(1.75→1.5%)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1.6%대를 형성하고 있다.
  - \* 6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(1.75→1.5%) 이후 시중 예금금리(2~4년 평균)는 1%중반까지 하락하여, [9월 1.67%, 10월 1.68%(한은공시), 11월 1.64%(은행연합회 공시(11.18) 은행별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]
-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·의결을 거쳐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 후에도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리를 0.2%p 추가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.

저축기간	1개월 이내	1년 미만	2년 미만	2년 이상
기 존	0%	1.2%	1.7%	2.2%
변 경	동 일	1.0%	1.5%	2.0%

- 다만,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,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.
-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.

※ (예시) '13.1.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'16.01.30 해지 시 적용 이자율 :  
('13.1.1~'13.7.21) 4.0%, ('13.7.22~'14.9.30) 3.3%, ('14.10.1~'15.2.28) 3.0%,  
('15.3.1~'15.6.21) 2.8%, ('15.6.22~'15.10.11) 2.5%, ('15.10.12~'16. 1.3) 2.2%  
('16.1.4~'16.1.30) 2.0%

구 분	1개월 이내	1개월초과 1년 미만	1년 이상 2년 미만	2년 이상
82.07.23. ~ 85.12.31.	0%	1.8%	3%	6%
86.01.01. ~ 92.07.12.	0%	2.5%	5%	8%
92.07.13. ~ 02.10.28.	0%	2.5%	5%	10%
02.10.29. ~ 06.02.23.	0%	2.5%	5%	6%
06.02.24. ~ 12.12.20.	0%	2.5%	3.5%	4.5%
12.12.21. ~ 13.07.21.	0%	2.0%	3.0%	4.0%
13.07.22. ~ 14.09.30.	0%	2.0%	2.5%	3.3%
14.10.01. ~ 15.02.28.	0%	2.0%	2.5%	3.0%
15.03.01. ~ 15.06.21.	0%	1.8%	2.3%	2.8%
15.06.22. ~ 15.10.11.	0%	1.5%	2.0%	2.5%
15.10.12. ~ 16.1.3.	0%	1.2%	1.7%	2.2%
'16.1.4 ~	0%	1.0%	1.5%	2.0%

-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에 게시된 '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'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

○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9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\* 의견제출처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
(전화 : 044-201-3344, 팩스 044-201-5530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김수영 사무관(☎ 044-201-334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